

 신안산대학교	특임부총장에 관한 규정	규정 번호	2-3-25
		제정 일자	2019.03.01
		개정 일자	2021.08.20
		책임부서/팀·계	기획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 특임부총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특임부총장이라 함은 대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특정 직무와 관련된 경험과 업적을 쌓은 전문가이어야 하며, 세부자격은 특정 직무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위촉절차)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임부총장을 학교법인 순효학원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제4조(위촉기간) 특임부총장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기능) 특임부총장은 비상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대학발전에 관한 자문 및 조언
2. 산학협력 및 취업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이 위임하는 업무

제6조(예우) ① 특임부총장은 신안산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각종 의식에 있어서 합당한 예우를 받는다.

② 특임부총장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의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촉취소) 특임부총장이 그 명예를 손상시킬만한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특임부총장의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소요경비 및 급여) 특임부총장이 그 임무를 수행할 때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대학발전 기여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